

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20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8. 26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가. 사하구만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개발하고,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민간 주도의 축제 운영을 도모하며
- 나. 사하구청장이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축제위원회 기능,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)
- 나.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위촉 해제(안 제5조, 제6조)
- 다. 축제위원회 재원과 회계 등(안 제10부터 제12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8. 4. 18 ~ 5. 9 (21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주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부산광역시 사하구 축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,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축제 기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
2.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3. 축제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문화예술전문가, 문화예술·축제행사에 경험이 있는 자
2.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
3. 문화예술·관광 및 축제 등에 관계하는 공무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④ 특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- 1.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
- 2.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
- 3.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제7조(간사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전문성 제고)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고문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0조(재원 및 회계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.

- 1. 국·시비와 구비 보조금
- 2. 기타 수입금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원으로 축제관련 이외의 타 용도로 지출할 수 없으며, 재원 집행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」의 예에 따른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